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85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허 영·채현일·박균택

송기헌 · 서영교 · 전용기

이강일 • 박선원 • 윤종군

백혜런 • 정성호 • 임호선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 경제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금융 태도 및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에 취약한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미흡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었음에도 선택과목으로 배치되어 있는 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 경제교육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민의 경제ㆍ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

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활성화(안 제5조 제3항 및 제4항)

경제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경제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경제교육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민 대상 경제교육의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 확대 등 역할 강화(안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경제교육을 시행할 때 지역별 · 세대별 대상을 고려하도록 하고,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범죄 피해예방교육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경제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한 평가(안 제11조제2항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 품질을 관리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교육대상별로"를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대상별로"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경제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공하고 경제교육과 관련된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지역 실정에 맞는"을 "지역별 및 세대별 교육대상을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및 금융범죄 피해예방교육

제11조의 제목 중 "제출"을 "제출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그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교
	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u>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u>
	<u>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u>
	별자치도 교육감(이하"교육감"
	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
	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
	원회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경제
	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	<u>4</u>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	아동, 청
<u>상별로</u>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	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
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기별·대상별로
④ (생 략)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① -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①	^リ/ユト('ゟ゚゚゚゚ル゚ヸ゙゙゙゙゙゙゙゙゙゙゙゙゚゚゚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운영) ① · ② (생 략)

-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생략)
- 2. <u>지역 실정에 맞는</u> 경제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운영
- 3. (생략)
-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 6. (생략)

④ · ⑤ (생 략)

제11조(실적보고서의 <u>제출</u>) (생략)

<신 설>

-----<u>제공하고 경제</u> 교육과 관련된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 음)

- ③ -----
- -----.
- 1. (현행과 같음)
- 2. <u>지역별 및 세대별 교육대상</u> 을 고려한-----
- 3. (현행과 같음)
- 4.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주 민에 대한 경제교육 및 금융 범죄 피해예방교육
- 5. 6. (현행과 같음)
- ④ · ⑤ (현행과 같음)
- 제11조(실적보고서의 <u>제출 및 평</u> <u>가</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사 업에 그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